

대구지방법원 2023. 4. 26 선고 2021가단14343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하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창화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3. 15.

판 결 선 고 2023. 4. 26.

주 문

1.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2019. 8. 3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48,072,25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8,072,2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C를 상대로 대구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심판을 제기하여 2019. 1. 10. “C는 원고에게 과거 양육비로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심판을 받았고, 위 심판은 2019. 1. 29. 확정되었다.

나.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8. 31.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자녀로는 C2), 피고 등 모두 8명이 있다.3)

다.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피고는 2021. 10. 2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7/8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8. 31.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당시 C는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22. 6. 3. F에게 이 사건 각 지분을 매도하고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4억 9천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47016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은 그 상속비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지분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었다. 그런데 C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의하여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위 분할협의를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1)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허용된다. 이 사건 분할협의를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사정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한다.

2)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참조).

3)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2014. 4.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피고는 2022. 6. 3.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 당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피담보채권액 등은 합계 95,704,184원인 사실, 상속 등기에 소요된 비용은 합계 9,543,180원, 재산세는 174,6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변론 종결 당시 시가가 4억 9천만 원인 사실은 추인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은 384,578,016원(4억 9천만 원 - 95,704,184원 - 9,543,180원 - 174,620원)5),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8 지분 가액은 48,072,252원(384,578,016원 × 1/8)이고 이 가액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6) 보다 소액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해야 할 금액은 위 부동산 지분 가액 상당인 합계 48,072,252원이다7) .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48,072,25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그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8,072,2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 청구 인용

판사 김범준

별지

1)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가액배상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이상 그 가액배상 범위 내에서 취소를구하는 것으로 본다.

2) 피고는 C는 망인의 친생자가 아니고 상속권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가족관계증명서에 C는 망인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다.

3) 망인의 배우자는 이미 사망하였다.

4) 이 사건 각 지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G(망인의 자녀인 망 H의 대습상속인으로

보인다) 소유의 각 1/8 지분도함께 매도되었다.

5) 원고는 상속 등기에 소요된 비용, 재산세 납부 비용 등을 공제하여 공동담보가액을 산정해야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이에따라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

6)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한 가액을 말한다.

7) 피고는 그 밖에도 양도소득세와 중개사 수수료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공제할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